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75호    2010. 8. 5.(목)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9호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4호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 계속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3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39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3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생과란의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생과	10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의 폐쇄등  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소)심사 청구 등	「정신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

		<p>마. 정신질환자의 퇴원(소), 임시퇴원(소), 처우개선 명령, 심사결과 및 조치 내용 통지 등</p> <p>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p> <p>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발급</p> <p>아. 정신질환자 진단·치료비용 징수 및 통지</p>	<p>같은 법 제29조,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p> <p>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p>	
위생과	11	<p>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p> <p>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 정지 명령 등</p> <p>다. 청문</p>	<p>「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p> <p>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p> <p>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p>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9호

###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 등으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 한다.

##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제출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 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고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추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장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요액
3. 문화관광체육관계		
(1) 유통관련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등록·허가	1건	30,000원
(2) 유통관련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등록·허가 사항 변경	1건	20,000원
(3)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30,000원
(4)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사항 변경	1건	15,000원
(5)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사항 변경	1건	15,000원
(7)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8) 공연장 변경등록	1건	20,000원
(9) 영화상영관 등록	1건	30,000원
(10) 영화상영관 등록 사항 변경	1건	30,000원
(11) 영화업 신고	1건	30,000원
(12) 영화업 신고 사항 변경	1건	20,000원
(1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제4조(위치)** 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블럭 1롯데 검단일반 산업단지에 둔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재위탁 법인을 포함한다)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서류)**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전문가
  2.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재활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직업재활시설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직업재활시설과 연계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재활시설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구청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2조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구에 귀속된다.
4.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시설 및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및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구 및 인력)**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내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중증장애인 비율을 60%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생산공정상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장애인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수탁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이 과소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승인)** ① 수탁자는 최초 사업운영계획 수립 이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명 및 운영자	/ (생년월일 )
법인소재지	
시설의 장	(생년월일 )
위탁운영기간	
특기사항	
<p>「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①</p>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다음에 제3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

제6조제2항 중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역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054호

###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하 “사료관” 이라 한다)”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사료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사료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사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209-3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녹청자에 대한 조사·연구
2. 유물의 보존 및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3. 국가시책 및 구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4. 도예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사료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료관을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며,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수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사업계획서 및 사업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사료관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유물 구입) ① 구청장은 보존 및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물 구입을 완료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도난·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유물임이 판명된 경우
2. 진위여부에 관하여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제10조(유물 기증)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물 등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 ③ 기증은 무상을 조건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유물 기탁 등)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위탁 보관·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사료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사료관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5.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3조(사용료 징수) ①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② 일일체험 및 도예교실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 의한 체험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일일체험 및 도예교실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체험장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수강료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체험장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람시간) ①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사료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애완동물을 함께 데리고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
3.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및 악취를 발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

제16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

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2.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사료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을 하는 행위

제17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오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은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으로 본다.

## 【별표 1】 (제13조제2항 관련)

### 1. 일일체험학습 체험료(1회 기준)

학습과정	교육내용	이용요금 (1인 1점 기준)	
		개인	단체(10인 이상)
물레성형	물레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 제작	9,000원	7,000원
흙가래성형	흙가래와 흙가래를 서로 붙여가며 성형	8,000원	6,000원
토우만들기	흙을 눌러가며 동물이나 사람을 제작	8,000원	6,000원
판상성형	흙 판을 이용해 사각접시 등을 제작	10,000원	8,000원
핸드페인팅	초벌 된 접시나 컵에 안료로 그림 그리기	8,000원	6,000원
상회도자기	완성된 컵 위에 안료로 장식 후 150℃에서 소성	5,000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시 가격할인	4,000원	

※ ① 1일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

② 이용요금은 재료비, 소성비 포함 가격임(단, 소성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이용금액에서 3,000원을 감한 금액으로 산정)

③ 소성 후 직접방문 수령하지 않고 우송 또는 택배발송을 원할 경우 착불(수취인부담)

※ 소성이란 성형된 도자기를 가마에서 굽는 것을 뜻함

### 2. 도예교실 정규과정 수강료

구분	수강료	모집기간	수업시간
정규반A과정	월80,000원	수시모집	주2회 / 1일 3시간
정규반B과정	월50,000원	수시모집	주1회 / 1일 3시간

### 3. 가마소성요금

구분	소성대행 (외부에서의뢰시)	정규반 소성요금(1kg)
가스가마소성비	10,000원	6,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할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의 요금란 다음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할인요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명	기준	요금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할인요금	비고
사계절썰매장	대 인	7,000원	3,500원	1회 입장

(야외풀장 포함)	청소년	5,000원	2,500원	기준
	소인	4,000원	2,000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경우 관리관은 사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등록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39호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검암2지구 및 경서동 일원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50점)을 고시합니다.

2010. 8. 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검암2지구, 경서동 일원
- 측량연월일 : 2010년 7월 14일(지적도근점 50점)

###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 지 】

## 지적기준점(지지적도근점)

일련번호	명 칭	중부좌표		비고
		X	Y	
4303	지적도근점	451660.29	171506.69	검암2지구
4304	지적도근점	451611.91	171512.26	검암2지구
4316	지적도근점	451553.25	171440.42	검암2지구
4315	지적도근점	451610.21	171412.62	검암2지구
4314	지적도근점	451679.21	171379.60	검암2지구
4300	지적도근점	451738.50	171394.91	검암2지구
4308	지적도근점	451660.41	171737.50	검암2지구
4290	지적도근점	451710.67	171734.29	검암2지구
4341	지적도근점	451506.18	171665.66	검암2지구
4344	지적도근점	451412.63	171527.05	검암2지구
4347	지적도근점	451396.11	171468.08	검암2지구
4351	지적도근점	451201.86	171458.85	검암2지구
4353	지적도근점	451361.44	171647.41	검암2지구
4354	지적도근점	451376.65	171681.05	검암2지구
4335	지적도근점	451522.78	171874.95	검암2지구
4336	지적도근점	451520.02	171810.76	검암2지구
4324	지적도근점	451605.20	171737.60	검암2지구
4326	지적도근점	451536.78	171605.12	검암2지구

일련번호	명 칭	중부좌표		비고
		X	Y	
917	지적도근점	450459.13	167802.68	
3850	지적도근점	450549.96	167978.31	
935	지적도근점	450602.70	168091.87	
926	지적도근점	450539.50	168203.75	
924	지적도근점	450349.79	168120.74	
941	지적도근점	450248.28	168076.81	
906	지적도근점	450147.20	168032.18	
893	지적도근점	449636.14	168247.42	
892	지적도근점	449570.99	168300.28	
891	지적도근점	449531.42	168372.07	
890	지적도근점	449628.18	168437.86	
953	지적도근점	449554.05	168546.33	
952	지적도근점	449661.92	168619.03	
889	지적도근점	449735.86	168511.78	
888	지적도근점	449841.68	168585.03	
885	지적도근점	449770.15	168691.83	
886	지적도근점	449849.70	168745.28	
887	지적도근점	449922.36	168639.97	
951	지적도근점	450025.56	168710.85	
913	지적도근점	450104.15	168764.94	
912	지적도근점	450146.65	168677.90	
909	지적도근점	450156.23	168394.61	
908	지적도근점	450136.97	168354.97	
907	지적도근점	450146.10	168198.62	
933	지적도근점	449785.71	167807.09	
898	지적도근점	449868.66	167851.40	
900	지적도근점	449996.01	167616.24	
901	지적도근점	450091.93	167672.76	
947	지적도근점	449966.93	167903.86	
905	지적도근점	450057.81	167962.86	
902	지적도근점	450187.33	167727.88	
919	지적도근점	450282.06	167783.15	